
성도이엔지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최종보고

법무법인(유) 율촌

2024. 8. 26.

목 차

I. 프로젝트 개요	3
II. 안전보건관리 현황	7
1. 조직 및 안전보건 관련 현황	8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주체	11
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이행 범위(샷장)	13
III.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	17
1.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해	18
2. 구체적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방안(개선점)	26
3.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64
IV. 최종 산출물	69

I.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재해 사전 예방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형사 리스크 최소화

-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관리·감독상 조치들을 안전보건 확보의무로서 경영책임자들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지 약 2년 반**이 지났음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형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및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가중**되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형사책임 감면**이 가능함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에 하나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귀사에 구축되어 있는 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적법한 지, 중대재해 발생 등 유사 시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임

주요 검토 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계획', 안전보건 '규정', 안전보건 '조치'	안전보건 '사고 발생 및 조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조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의 직책, 역할 및 권한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과 집행 안전보건 업무수행, 보고 및 조직운영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주체와 절차 및 범위 안전보건 공통 지침·개별 규정 존재 및 준수 여부 안전보건 회의체 운영 도급, 용역, 위탁 현황, 협력업체 관리 정도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프로세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경위 산업재해 발생 후 단기적·장기적 조치 안전보건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결과 및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점검 프로세스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별 이행 실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안전보건확보의무별 이행 실태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검토
-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신설이 필요한 사항,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련 본사 및 현장 매뉴얼 등 검토(적법성, 적절성, 본사와 현장 매뉴얼간 정합성 등)
- 전사 안전보건확보의무 관련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인터뷰 진행 및 운영 실태 검토(서류/인터뷰 점검을 통한 적법성, 적절성 등)
- 귀사에서 선별한 주요 4개 현장 방문하여 현장 관리 실태 검토(서류/인터뷰 점검을 통한 현장 작동성 점검)

프로젝트 진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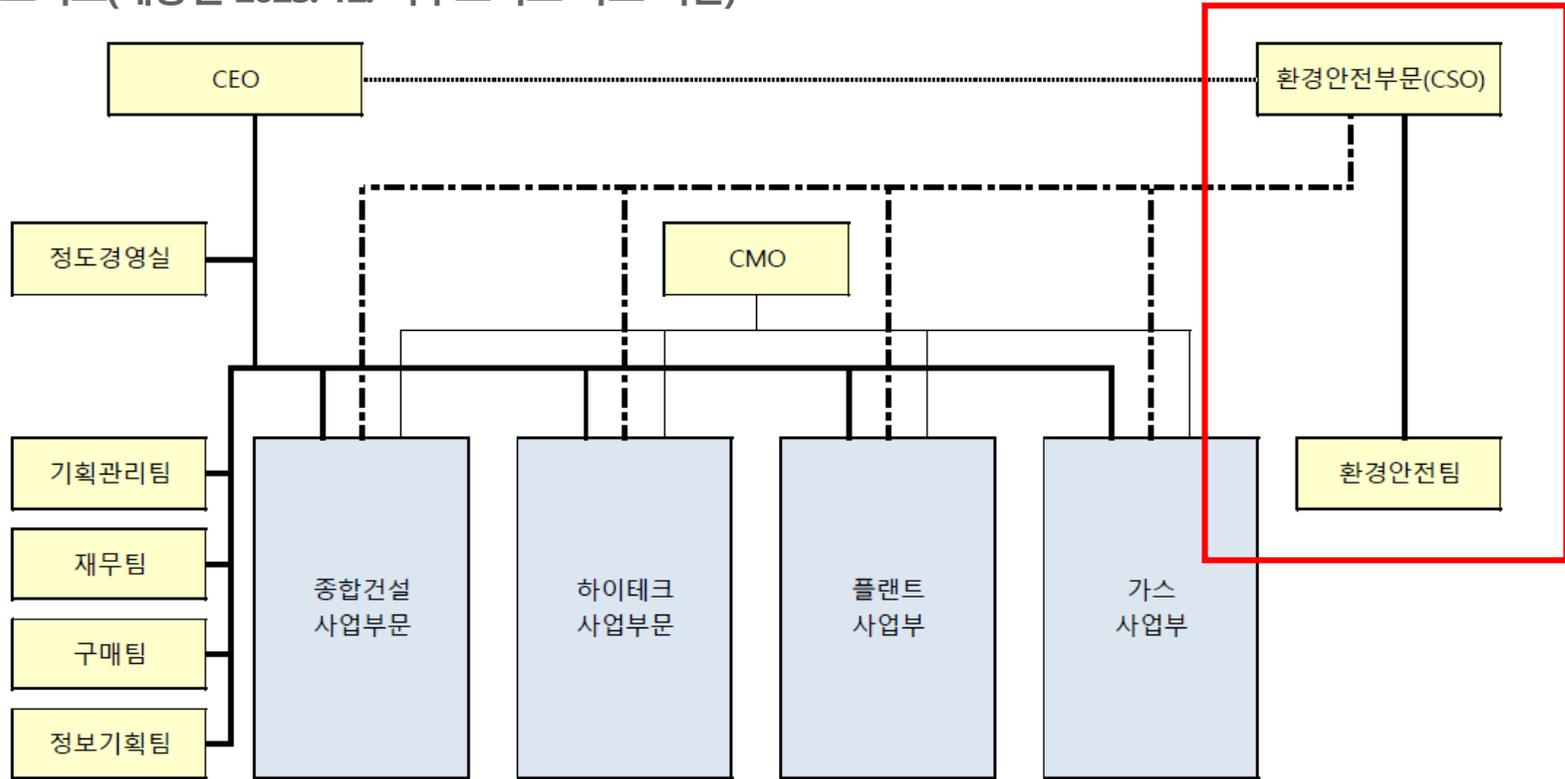
구분	세부과제	1~3W	4~6W	7~9W	10~12W	13~15W	16~18W	19W~	비고
Kick-off 미팅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킥오프 미팅	방문							2024. 2. 27.
요청자료 수신	컴플라이언스 추가 요청자료 수신								-
본사 방문 인터뷰	본사 방문 인터뷰		방문						2024. 4. 1.
현장 방문 실사/인터뷰	2개 현장 방문 실사/인터뷰(화성 도교, 양지 테스)		방문						2024. 4. 3.
현장 방문 실사/인터뷰	2개 현장 방문 실사/인터뷰(탕정 흑업, 아산 웰스토리)			방문					2024. 4. 9.
추가 검토자료 수신	공장 및 샵장 등 운영지침 관련 검토자료 수신								-
본사 및 현장 요청자료 수신	본사 및 현장 인터뷰 후 추가 요청자료 수신								-
컴플라이언스 중간보고서 제출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중간보고						방문		2024. 6. 12. 방문
컴플라이언스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최종보고서 및 제규정 등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최종보고							방문	2024. 8. 26. 방문

II. 안전보건관리 현황

1. 조직 및 안전보건 관련 현황

안전보건관리 현황(1/2)

본사 전체 조직도(제공된 2023. 12. 기구조직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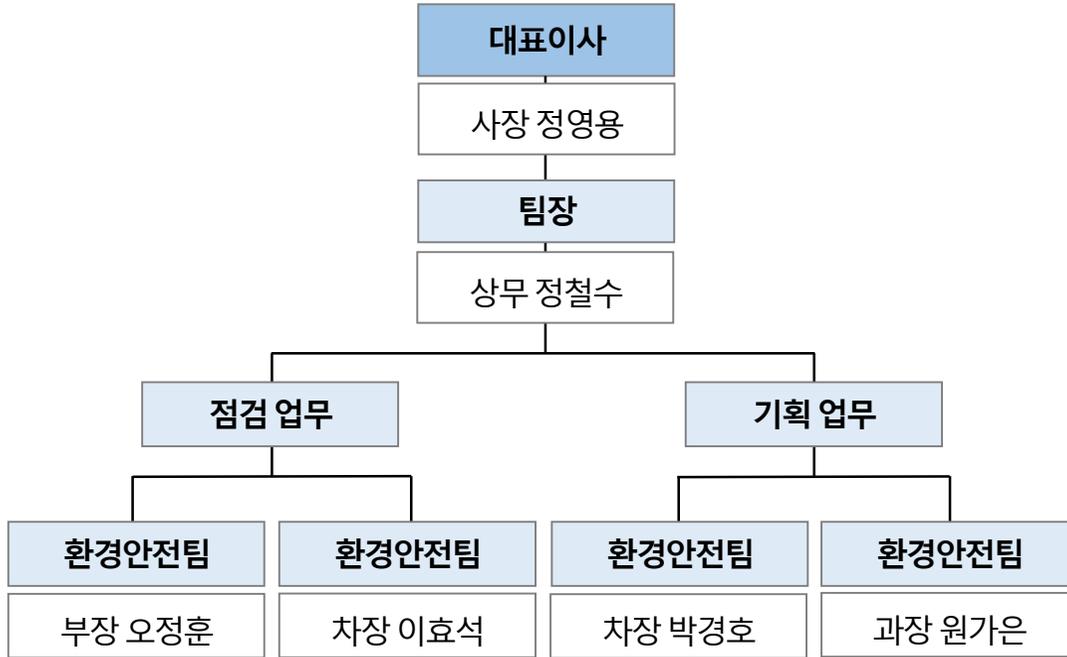


안전보건 조직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2023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59위**로 확인됨)
- 귀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서 “환경안전팀”을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하여 운영 중임

안전보건관리 현황(2/2)

환경안전부문 조직도(2024. 3. 1. 기준)



환경안전부문 인원 현황		
사장		1명
환경안전팀	기술위원	1명
	부장	1명
	차장	2명
	과장	1명
총원		6명

안전보건 조직 현황

- 환경안전팀은 약 2년 전에 2명이 증원되었으며, 현재 환경안전팀을 포함한 환경안전부문 전체 인원은 **총 6명**으로 확인됨
- 환경안전부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및 보고/결재 등에 관하여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분장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주체

의무 주체: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 처벌대상

형사처벌 대상

【경영책임자등】

-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의 대표자

- 사업(기업체)의 운영 전반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상의 상위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총괄 담당자

- 대표이사에 준하는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 하는 자

- 법문상 "또는" 해석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이상 누구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병존적 처벌 가능성 있음

경영책임자 관련 개선방안

- **환경안전부문 위임전결규정**의 경우, **회사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작업 중지, 도급 계약 등에 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예산권, 인사권,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은 환경안전부문 위임전결규정에 일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작업중지권, 반기점검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안전부문 위임전결규정에 구체적으로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부문의 전결권의 경우 **최소한 환경안전부문의 전결권과 상충·중복되거나,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개정·개선** 필요
- **개선된 위임전결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규정과 실질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즉, 귀사 기안, 품의 등 결재서류에 있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가 수신, 참조 등이 아닌 결재란에 최종 결재자로서 명시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문서 상단의 결재라인에는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까지만 기재하여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밖에 **조직도 및 공사개요서 등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시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관되고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이행 범위(샷장)

장소 및 인적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고용노동부는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실질적 지배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 장비나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검찰은 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생산, 서비스 등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여 도급인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음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판단시 고려 요소 - 대검찰청 해설서**
 - ①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주 등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파견 여부
 - ②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여부
 - ③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작업이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업무 결정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관여하는지 여부
 - ④ 해당 장소의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⑤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장소 및 인적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장소 및 인적 적용범위

<샬장 현황>

구분	샬장	지배/운영/관리 해당 가능성
1	안성 기흥화성 NRD-K	높음
2	탕정 흑업	높음
3	포항 포스코퓨처엠	비교적 낮음

<샬장 내 종사자 현황>

구분	샬장	협력업체	종사자 범위 해당 여부
1	안성 기흥화성 NRD-K	인제이엔지 / 코레이엔지	높음
2	탕정 흑업	우성이엔지 / 은민테크 / 이원이엔지	높음
3	포항 포스코퓨처엠	에이씨알텍	비교적 낮음

검토

- **[안성 기흥화성 NRD-K]** 협력업체와 기술자문 계약서, 납품 및 설치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귀사와 협력업체와의 관계의 실질은 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귀사가 샬장의 토지 및 건물을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등 귀사가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또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해당 샬장 및 샬장 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 **[탕정 흑업]** 귀사가 샬장의 토지 및 건물을 협력업체에 임대하고 건물안전관리 등 귀사 소속의 필요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등 귀사가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또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해당 샬장 및 샬장 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 **[포항 포스코퓨처엠]**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샬장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귀사가 아닌 제3자가 갖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위 부동산 소유권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으며 샬장에 귀사 안전관리 등 임직원이 상주하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또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해당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며, 해당 샬장 및 샬장 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표준화도급계약서상 협력업체가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귀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바, 시공 및 공사 현장이 아닌 샬장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고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계약서를 수정(예컨대, 샬장의 인력 투입, 작업 계획 등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등)하고, 실질적으로도 협력업체가 샬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Ⅳ.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

1.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 의무주체: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즉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
- 행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 양벌규정: 사업주 & 행위자
 - ▶ 산업재해 예방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치 의무
 - 예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 의무 주체: **경영책임자등**(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
- 행위자: **경영책임자등**
-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 법인**
 - ▶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여부 확인, 시정 등
- (안전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요성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 사업주의 의무 / 안전관리책임자의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리상 조치

※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의 이행

산안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 사업주의 의무 / 안전관리책임자의 이행

-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중심의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부족 (**개별 사업장 차원 안전보건 조치 →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수립 필요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

인력·예산 등 필요한 조치
(제5조 2항 2호, 4호)

적정한 예산 편성·집행 및
관리체계(제4조 4호)

제도/절차 마련



점검 결과 보고
(제5조 2항 1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제5조 2항 3호)

점검 결과 취합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1/3)

[2024. 8. 22. 기준] 총 18건

구분	기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1호	OO파트너스	'23. 4. 6.	•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제2호	OO제강	'23. 4. 26.	•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실형, 법정구속)
제3호	OO건설	'23. 6. 23.	• 구조물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3년)
제4호	OO건설	'23. 8. 25.	•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5호	OO건설	'23. 10. 6.	•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90킬로그램의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제6호	OOOO산업 (아파트관리업체)	'23. 10. 12.	•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가 약 1.1미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징역 8월(집유 2년)
제7호	OOOO건설	'23. 10. 18.	• 기숙사 굴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2월(집유 3년)
제8호	OO산업	'23. 11. 3.	•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급성 간염 등 증상 발병을 초래한 사고	징역 1년(집유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제9호	OO철강	'23. 11. 9.	• 띠강/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저혈량 쇼크로 숨진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2/3)

[2024. 8. 22. 기준] 총 1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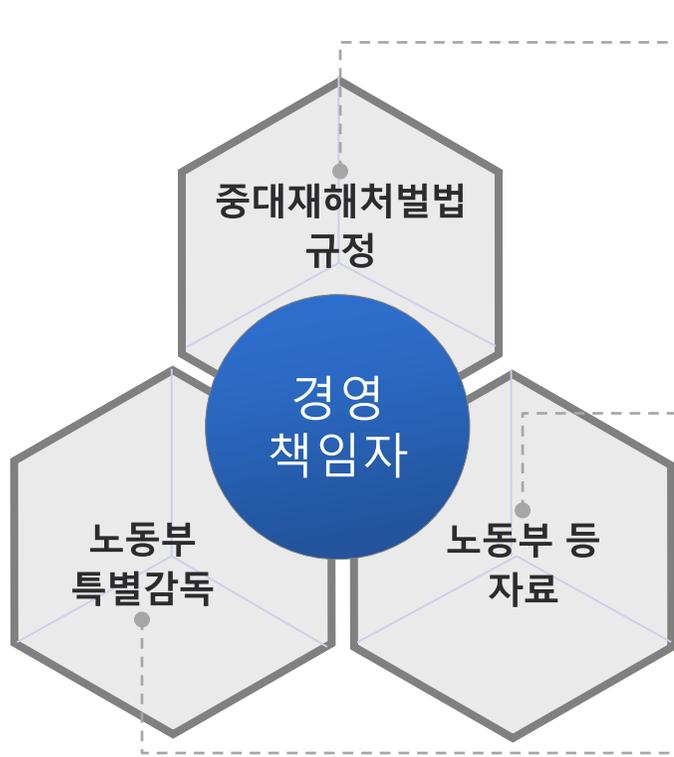
구분	기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10호	OO건설	'23. 11. 17.	• 상수도 확장 공사 중 청소를 하던 하청종사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11호	주식회사 OO	'23. 11. 21.	•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12호	OO건설	'23. 12. 21.	• 주차타워 지하에서 3톤이 넘는 무게의 리프트(차량운반기)가 상승하면서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고	징역 6개월(집유 1년)
제13호	OO포장	'24. 1. 16.	• 기계 설비 운전원이 골판지 가공 기계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들어 가면서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2개월(집유 2년)
제14호	OOO산업개발	'24. 2. 7.	• 약 11미터 높이의 철골보(철근골조)에서 볼트 조임 작업을 하던 중 외부 계단으로 건너가 준비물을 놓아두고 고소작업대로 다시 넘어오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15호	주식회사 OO	'24. 4. 4.	•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두개골이 파열돼 사망한 사고	★징역 2년(실형)
제16호	건설회사	'24. 4. 24.	•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17호	건설회사	'24. 5. 2.	• 견출 작업중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18호	주식회사 OO	'24. 7. 4.	• 크레인으로 인양된 채널 아래에서 높이 조정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채널이 낙하하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3/3)

- ✓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음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아직까지 무죄선고는 없음. 또, 그 중 1건은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 다른 1건은 2심 항소심 유죄가 선고 되었음
- ✓ 또, 세간의 관심이었던,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중처법이 헌법상 명확성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 ✓ 총 18건의 선고 사례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 11건**이고, 나머지는 제조업 등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이었음. 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함
- ✓ 총 18건의 선고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건**(징역 1년, 징역 2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집행유예가 선고된 16건에서 징역형은 6월 1건, 8월이 1건, 1년이 9건, 1년 2월이 1건, 1년 6월이 3건이 있었고, 집행유예기간은 3년이 5건, 2년이 10건, 1년 1건 임. 즉, **최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에서 최고 실형 2년** 사이의 선고가 있었음
- ✓ 판결문에 실시된 양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측에 유리한 자료로는 **'유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고, 그 외 자백 및 반성, 피해자 과실의 개입여부 등도 실시되었으며, 불리한 자료로는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안전문제를 방치했는지 여부(실형2년, 15호 판결)**가 중요하였음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

[원칙과 기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보고체계, 프로세스, 시스템 마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이드북/해설서, FAQ 등 수사기관 자료

- 고용노동부: 2021. 8. 29. 경영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11. 17. 시행령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발표, 2022. 1.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FAQ 배포,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특별감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감독 실시
 - 1)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2) 안전관리 목표,
 - 3) 인력·조직/예산 집행 체계, 4) 위험요인 관리체계, 5) 종사자 의견 수렴,
 - 6) 협력 업체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추가 고려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동향 및 판례 등 선례

1)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자료, 2) 핵심 쟁점이 되는 의무, 3) 수사 흐름 등 수사 동향 및 대응, 4) 판례

2. 구체적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방안 (개선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 의견(요약)

중대산업재해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종합 의견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률을 정략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수치화 된 목표 설정 현장 종사자들이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을 각인·인지시킬 수 있는 활동 필요 <p>※ [도쿄일렉트론] 주말작업에 관한 고용노동부 보고 사항은 현재는 종료된바, 현재 기준으로 현장의 특성(크린룸 작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목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p>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안전팀 인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합리적인 인원수와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하고, 적정성 등 논의 필요
1-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가 1차 위험성평가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여 필요 비정형작업에 대하여도 특별관리를 하고, 작업허가제 규정 마련 필요 아차사고(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p>※ [도쿄일렉트론]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① 각 현장별 매년 정기 평가일을 지정하여, 위험성평가를 다시 점검하고, 이를 '정기 위험성평가'라는 서류로 별도 마련하여 증빙화 할 필요가 있음. ② 나아가, 정기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안전팀에서 실시 여부를 사후 확인</p> <p>※ [도쿄일렉트론 / 탕정 흑업] 작업 내용상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항목을 추가·보완하고, 추가·보완 내용이 없다면 타 재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추가·보완할 사항은 없다는 취지의 코멘트 기재</p> <p>※ [도쿄일렉트론 / 양지 테스] TBM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p>
1-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갖추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실적 대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근거를 남기는 등 합리적인 절차 마련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예: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에 대한 종합 의견(요약)

중대산업재해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종합 의견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부여할 권한과 예산 수준 마련 필요 현장 단위가 아닌 개별적인 평가 시행 필요
1-6	산안법상 요구되는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시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배치 현황을 본사 차원에서도 이중 체크 필요 안전관리자 외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공백 시 긴급대체, 신속채용 시스템 마련
1-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하여 점검 및 조치(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QR코드의 활발한 운영 위해 본사에서 피드백을 받고 현장에 충분히 전파 필요 건의한 의견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1-8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화재사고로 모의훈련을 진행하더라도 복합적인 중대재해 요소 추가 작업중지권이 담긴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p>※ [도쿄일렉트론 / 탕정 흑업] 현장 자료들에서 명시되는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여 통일</p>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선정” 단계에서 평가체계 마련하고, 이 경우 과락제도 도입 고려 작업 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을 정하고, 의견청취 및 심의 절차 마련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 대책에 현장 담당자 및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 마련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재점검하는 환류체계 마련 외부업체(제이세이프티)의 점검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 보다는 본사 환경안전팀 및 현장의 안전보건 인력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 필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점검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위와 같이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치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제반 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면책/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23)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안전관리자 등 3인 이상 선임의무가 있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1-3	유해·위험요인 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이행(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1-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갖추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1-6	산안법상 요구되는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및 검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시간 보장
1-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하여 재해 예방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해 가능)
1-8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1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 를 보고받을 것(전문기관에 점검 위탁 가능)
4-2	불이행 보고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
4-3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 를 보고받을 것
4-4	불이행 보고 시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2/23)

1-1

▪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시행령 제4조 제1호)

- 경영책임자 및/또는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장이 주관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적인 회의체가 존재하는지
- 경영책임자가 경영전략에 안전보건경영을 반영 및 추진하여 안전보건의 경영에 핵심요소임을 강조한 바 있는지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가치 표명, 추진의지, 방향성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이 작성되어 있는지
- 전년도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 경영책임자가 주기적으로 개별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지
- 발주처 및 협력업체에게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전파하고 있는지
-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게시하고,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지(경영방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활동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 판단 기준(이하 동일)

- 중대재해처벌법령
- 노동부 가이드라인 법 해설서
-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 중대재해 사건 및 수사 쟁점사항
- 타사 우수 사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3/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전사적인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였고, **2024년도 안전보건 목표는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개선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한다."**이며, 그 **아래 5가지(안전시스템, 안전 점검, 안전 교육, 안전 문화, 협력사 관리)를 구분하여 추진계획을 다시 세분화 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장에서는 본사에서 수립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게시하고 교육, TBM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익년도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대표이사, 부서별 인원이 모여 당해연도 계획을 피드백하는 등의 논의 자리를 갖고, **수립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에 대하여 본사 및 현장에서 이행률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외부업체(제이세이프티)의 반기별 평가를 바탕으로 연말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나, 현장 단위로 평가하고 있어 같은 현장 내 인력들 간 개별적인 평가점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행 방안

- 전사 차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률을 관리하여 **일응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5가지로 구분된 안전보건 목표의 이행률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략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보다 수치화 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술인력 확보'의 경우 'OO 이상 자격을 가진 인력 O명 이상 확보', '위험성평가 특화 안전점검 실시(건설안전 전문기관 활용)'의 경우 '위험성평가 특화 안전점검(건설안전 전문기관 활용) 매월 O회 이상 실시' 등
 - 향후에는 **전년도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과제와 관련된 목표를 추가할 필요 있음(예시 규정 율촌 제공)**
- **현장 종사자들이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이 실질적으로 각인·인지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활동(예컨대, 화장실 및 휴게실 내에 게시, 안전보건 교육자료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기재한 슬라이드를 추가하여 노출·전파 등)이 필요해 보임**
- 현장별/공종별 필수적인 안전보건활동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현장 단위의 평가가 아닌 개별 인력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개인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4호 판결인 만덕건설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피고인 F의 2022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22. 1. 5.경 이를 이사회에 보고함”
- “위 계획에 따르면, 피고인 F의 2022년도 안전·보건 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및 근로자 안전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의식 수준 향상”이고, 이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1) 안전문화 확산, 2) 교육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건설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재해의 예방,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4/23)

중대산업재해

1-2

-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3명 이상 선임할 의무가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시행령 제4조 제2호)

- 안전보건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어 독립성 및 조직강화가 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지
- 전담조직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으로 다수인의 결합체를 의미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5/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안전보건 전담조직(환경안전팀)이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음**
- 환경안전팀 조직도상 **환경안전팀 인력은 총 6명**으로,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 1명, 환경안전팀장 1명, 점검 업무 2명, 기획 업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안전팀 업무분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환경안전팀 인력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외에도 **ESG 업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 환경안전팀 인력으로 기술적인 역량을 가진 **공정안전전문가**(즉, 시공 기간 및 공사 금액 등 적정성 검토 인력)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 있고 연간 경영계획에 명시되어 있으나,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함

이행방안

- 귀사의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바, 귀사가 위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 전담조직(환경안전팀)은 일용 독립성을 갖추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경영책임자들을 보좌하며, 전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다만, 환경안전팀 인력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외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파악됨. **환경안전팀 인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 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 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환경안전팀의 업무분장표를 정비하여 안전보건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예시 규정 울촌 제공)**
- 환경안전팀이 귀사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합리적인 인원수와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귀사의 경우 공정안전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바, **총원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위 조직의 권한 및 인원수의 적정성을 확인 및 평가하는 논의 과정(예시 규정 울촌 제공)**을 갖고, **이를 기록하여 둘 것을 권유 드림**

조직의 역할과 책임 예시(1/3)

* 아래 “타 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대표적인 예시 사항을 작성함. 최소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결정할 경우 기획/재무/인사 관련 부서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Action Plan	환경안전팀	환경안전팀의 장	(가칭)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경영책임자등(대표이사)	타 부서*
경영책임자등 리더십 및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의지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및 공표 	
안전보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 후 이사회 보고 	
안전보건 활동 실적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활동 계획 이행사항 검토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및 개선 필요 의견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보고 받음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 받음 필요시 관련 지시 			
안전보건활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및 개선 필요 의견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보고 받음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안전보건 인력에 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 인력규모 산출(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조직(본사, 사업장)의 인력 규모 결정 채용 충원계획 보고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된 인력 규모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보고 받음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 재무 관련 부서]: 채용 및 재무상황 의견 제시
안전보건 예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 예산 산출(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업무 예산규모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된 예산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보고 받음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재무 관련 부서]: 예산 관련 의견제시

조직의 역할과 책임 예시(2/3)

Action Plan	환경안전팀	환경안전팀의 장	(가칭)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경영책임자등(대표이사)	타 부서
종사자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의견 청취, 검토 및 점검(반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받음 •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보고 받음 •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관리(반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및 점검사항 보고 받음 •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보고 받음 •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중대산업재해 적격 수급인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관리(반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과 절차 수립 및 이행사항 보고 받음 •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보고 받음 •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재발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받음 •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보고 받음 •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정부기관 명령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방안 마련 및 조치사항 확인(발생시) • 이행방안 관련 안전보건활동 계획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받음 •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보고 받음 •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사업장 밖 도급,용역,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운영·관리 책임자 점검 절차 수립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여부 불분명할 경우) 심의·의결 		

조직의 역할과 책임 예시(3/3)

Action Plan	환경안전팀	환경안전팀의 장	(가칭)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경영책임자등(대표이사)	타 부서
안전보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취합 및 분석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반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받음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보고 받음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유해·위험기계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 및 조치결과 취합 및 분석 유해·위험 방지 점검 및 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 검사 및 결과를 기록·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받음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보고 받음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유해·위험요인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 계획수립 및 확인 결과 취합 및 분석(반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받음 필요시 관련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보고 받음 필요시 조치 및 보완지시 	
종사자 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건강 보호 조치 수립 및 이행 관리 조치 결과 안전보건활동 계획에 반영 				
사업장 출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안전조치 점검, 및 조치 수립 조치 결과 안전보건활동계획에 반영 				
안전보건 규정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지침 등 불일치 및 누락 사항 점검 제·개정사항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개정사항 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6/23)

중대산업재해

1-3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반기 1회 이상의 이행상황 점검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작업별로 위험도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 위험성 평가 고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작업 대책(작업허가서, 조립도, 상세도 등)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는지
- 위험성 평가활동 작동성 제고를 위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지
-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활동에 활용이 용이한 위험성 평가기준, 방법 등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 아차사고 발생시 특별점검 실시, 특별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 수립, 아차사고에 대한 분석(개선 여부) 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및 보고하고 있는지
- 비정형작업에 대하여 운전정지, 작업허가제 실시 등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7/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협력업체가 1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진행하고 2주(월2회)마다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회의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가 참석하고, 이후 TBM 등을 통해 협력업체가 작업자들에게 위험성평가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귀사는 **모든 작업을 고위험작업으로 관리하고 작업허가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사 환경안전팀은 **올해부터 2주마다 전 현장의 위험성평가 자료를 전부 취합한 후, 그 중에서도 위험한 작업들을 선별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선정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행 방안

- **협력업체가 1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 경우 귀사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시점검을 활용하여 협력업체가 1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명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수사 대응을 위한 필요 조치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및 위험성평가 실행 이외에 **1) (단순 실행을 넘어서서)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이 적절하였는지, 2) 관련 작업자가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TBM, 교육, 현장 게시 등)** 등의 측면도 고려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작업을 고위험작업으로 특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이에 **본사에서 위험성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그 중 고위험작업 특별관리 활동을 하는 것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최근 수사 경향을 살펴보면, 고위험 작업에 있어 실질적인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바, **최소한 고위험 포인트에는 입회하여 관리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8/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류하거나 관리방안을 수립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작업허가제에 관한 규정(고위험 작업 정의, 작업허가 절차 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경미한 사고를 아차사고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통상의 ‘아차사고’)에 대한 관리 방안은 확인되지 않음

이행 방안

- **비정형작업에 대하여도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바, ①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비정형작업의 종류와 비정형작업이 사전작업허가제 실시 대상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할 필요**가 있으며(예: 재해 발생 등을 고려해 사전작업허가제 실시 대상에 추가할 비정형작업은 없는지 등 검토), **② 위험성 평가활동 작동성 제고를 위한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 **작업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통상의 아차사고 역시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활동(서식을 활용하여 자료화 하고,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참고로, 귀사는 경미한 사고를 아차사고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장 등에서 혼동이 없도록 경미한 사고와 아차사고 간 용어를 사전에 구분·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우수사례 및 수사 대응을 위한 필요조치

고위험작업 및 비정형작업 특별 관리

(시행령 제4조 제3호 관련)

[고용노동부 우수사례]

- (주)만도 원주공장: 월별로 끼임, 지게차, 밀폐, 고소작업 등 Theme 점검을 통해 고위험 항목을 선택/집중하여 점검활동
- 씨제이제일제당(주) 부산공장: 매년 끼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분석해 주요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하여 근원적 문제를 해결

[수사 대응을 위한 필요 조치]

- Check 1. 위험성평가 관련 제규정
- Check 2. 위험성평가 실행 고도화
- Check 3. 위험성평가 교육/참여/전파
- Check 4. 개선 조치 등 이행관리

(주)만도 원주공장

'22년 점검항목



씨제이제일제당(주) 부산공장

사내 끼임사고 유형 분석 결과

- 1 방호장치가 부재하거나 장치를 해제 한 후 작업
- 2 점검/수리 중 타 작업자 조작
- 3 설비트러블로 정지된 상태에서 점검 중에 설비 재가동
- 4 작업자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비 가동

개선 예

부서 / 설비	다시다 로타리 포장지	햇반 세미기
작업명	설비 운전(트러블 조치)	세미기 가동 중 설비 점검
끼임 유형	① 방호장치 부재/해체 후 작업	② 점검/수리 중 타 작업자 조작
문제점(Risk)	방호장치 해제 후 작업 중 끼임	점검 중 신호체계 미흡(가동으로 끼임)
사진		
개선	비접촉식 인터록 설치(해제/가동 不)	수동 조작 기능 제거
일정	10월 8일 조치 完	7월 10일 조치 完

★제5호 건륭건설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하여 공사 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동식 크레인 기사 등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함”
- “원청인 건륭건설은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와 컨설팅 및 자문계약을 체결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들고 초청 강연과 자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에 불과함.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로 보기 어려움”
- “위험성 평가표는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경험 등을 기초로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임”
- “2월 작성된 평가표에는 크레인 작업시 H-beam을 1줄로 결속하여 인양할 경우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H-beam을 2줄로 결속하여 인양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위험성 개선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월 작성된 평가표에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누락됐고, 결국 ‘한줄걸이’ 작업의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9/23)

중대산업재해

1-4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시행령 제4조 제4호)

- 필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지
- 금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 전년도 예산의 적정성 여부
 - 동종 업계 타 업체의 안전 예산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
- 예산을 편성/집행/관리하는 체계 마련 여부: 안전보건 예산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 조직 강화 및 예산투자확대 등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이사회에 보고되었는지
-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 항목들에 대하여 누락 없이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가 점검되는지
- 개별 현장(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비(또는 유사 명목의 비용)가 안전 및 보건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사용 현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개별 현장(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비(또는 유사 명목의 비용)가 부족하지 않은지(개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 편성을 요청할 경우 요청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추가 편성을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0/23)

중대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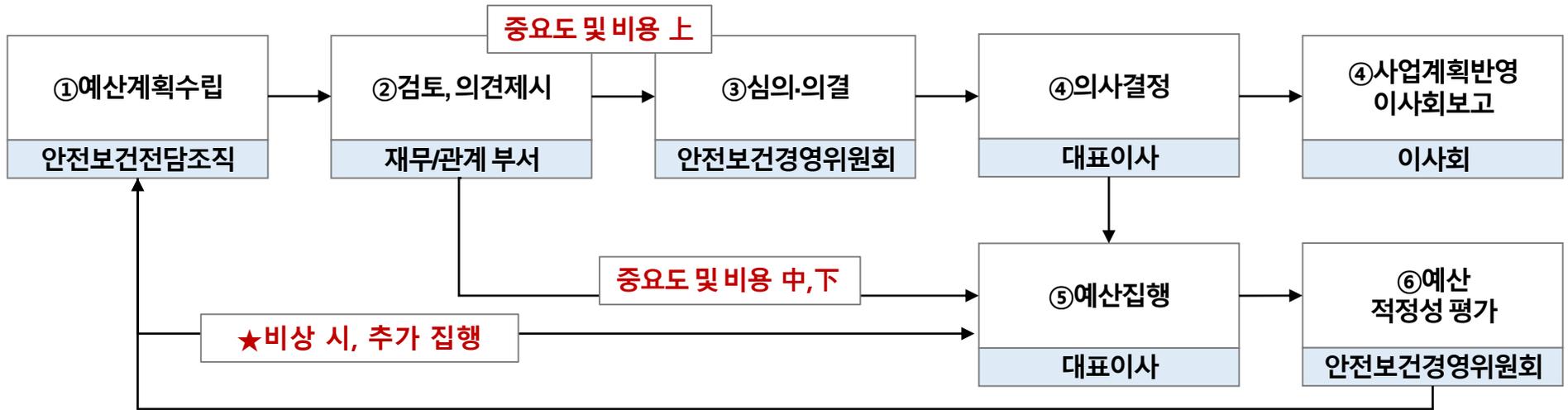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2024년도 환경안전부문 예산 수립 시 **정도경영팀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 실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2024년도 예산 기준액을 고지 받은 것으로 파악됨**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사전, 사후 평가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기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나 관련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행방안

- 안전보건 관련 예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안전보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해 발생 후 사후적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요한 인력, 자재, 설비, 기술 등의 안전보건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만일 2024년도 예산이 전년도 실적에 비해 삭감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예시 Flow 참고]** 현장의견 청취 → 예산부서/안전보건실 검토 → 현장 협의 → 예산부서/안전보건 전담조직 심의 → 이사회 결의
- 안전보건 예산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고, 항목별 예산을 수립하여 관계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예산을 평가하는 절차(예: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의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예시안 참고(예시 규정 울촌 제공)**

▶ 예산의 적정성 절차 마련 예시



- ① 예산계획수립 : 안전보건전담조직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필요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기초로 하여, 안전보건예산계획(연간, 수시 등)을 수립합니다.
- ② 검토, 의견제시 : 예산을 필요로 하는 관계 부서 및 재무담당 부서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 ③ 심의의결 : (편성 전 평가)사안에 따라 중요도 및 비용이 높은 경우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 ④ 의사결정 :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가 예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사회보고를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 ⑤ 예산집행 : 사안의 중요도 및 금액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예산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및 예산을 집행합니다.
- ⑥ 예산 적정성 평가 : (편성 후 평가)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검증하고, 전년 대비/반기 대비 분석, 월별 예산 현황 검토 등 종합적인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제4호 판결인 만덕건설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1. 관련 법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기준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보다 **폭넓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의무를 부담**, 산업안전보건법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 모두 포함**되어야 함. 또한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았다면 의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구체적 판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실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집행 사실 인정됨”
- “그러나,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별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 사실 없음**, 2)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전 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않음**(안전시설 설치하여 출입 통제하거나 유도자 배치 의무 위한 예산 편성 하지 않음, **작업유도원은 간간히 유도 업무 했을 뿐 전담 인력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므로**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1/23)

중대산업재해

1-5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에 관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였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권한 및 예산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해당 권한 및 예산의 적절성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지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2/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예산에 관하여 **현장 소장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전결권한은 특별히 없으나**, 대체로 현장 및 현장소장의 권한으로 현장에 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나, **현장 단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행 방안

- 필요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① 부여된 권한과 예산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충분한지, ②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규모를 판단하고 부여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부여할 권한과 예산의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앞서 제시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활용하는 등을 통해 심의·의결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시 규정 울촌 제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평가를 통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일용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현장 단위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제8호 건륭건설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에 따른 포상기준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에 따른 포상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
- 설령 공사현장에서 지켜야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에 따른 포상기준을 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3/23)

중대산업재해

1-6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할 것(시행령 제4조 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법하게 지정하였는지
- 안전보건전담인력이 안전보건 업무 외 타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지 여부 - 겸직/대행 등
- 타 업무와 겸직하는 안전보건 인력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고 있는지
- 회사의 사업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인력 규모인지
- 실질적인 안전, 보건 관리가 가능한 업무가 부여(적정한 업무 R&R)되고 있는지
-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장 및 본사의 안전 관리 인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경험이 없는 직원을 전환배치하여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4/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법정 선임 기준보다 1명 많은 인원으로 선임하고 있고, 퇴사 등 임시적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의 인력이 대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됨**
- 각 공사 현장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배치 현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현장의 안전관리자 등 선임 및 배치 현황을 본사 차원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행 방안

- 안전관리자를 법정 인원수보다 많이 선임하고 공석 발생 시 본사의 인력이 대체 투입하여 **일응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와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보건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외 전문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 시까지 본사 인력이 대체 투입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루트를 마련**하여, 공사 현장의 법적 전문인력이 법정 인원수에 미달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본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별 적법한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수를 파악**하고, 법정 인원수에 맞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었는지 여부 및 겸직 여부 등을 **이중으로 확인하고 현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자 등의 인력 현황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5/23)

중대산업재해

1-7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시행령 제4조 제7호)

-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 반기 1회 이상 소속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관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취합된 근로자의 의견 중 적정 개선 의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적정 의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가 존재하는지)
- 현장(사업장) 별로 적정 개선 의견이 취합되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및 개선 사항을 본사에 보고하고 있는지
- 적정 개선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및 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지
- 도급, 위탁 받은 제3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의견도 청취하는지
-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장 및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에서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지
- 종사자 의견 개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의견 개진자에게 무형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6/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귀사는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노사협의체, 현장통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제안 제도로 QR코드**를 만들어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곧 현장에 도입할 것으로 파악됨
- 종사자가 개선한 의견은 현장에 화장실, 휴게실, 흡연장 추가 설치 등 **복리후생에 관한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보임**

이행 방안

- 의견청취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QR코드를 마련하여 도입하는 것은 **일응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 만일 QR코드를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의사 개선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잘 전파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전파가 잘 되었음에도 운영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사 차원에서 피드백을 받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충분히 전파(예컨대 재차 협조 공문 발송, 현장 점검 시 지속적인 전파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당 QR코드로 연결된 사이트에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선한 종사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고 외국어 버전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종사자의 개선 의견 내지 건의사항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평가 및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가 건의한 개선 의견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예시 규정 율촌 제공)**
- 개선된 의견 등이 제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반려된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등을 마련하고 관련 증빙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7/23)

중대산업재해

1-8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시행령 제4조 제8호)

- 작업중지권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정립되어 있는지
-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에 관한 관리(횟수, 후속 대응 현황, 작업 재개 기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작업중지권 관련 절차 수립 및 적정 이행 검토(적정 작업중지인지 여부에 관한 사후적인 판단,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보상 방안 및 불이익 예방 방안 수립)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중대재해 발생 급박 위험 인지 시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확인점검하는지
-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 중대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 보고가 정립되어 있는지
- 중대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 위험 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여부를 반기 1회(연 2회) 점검하고 있는지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 및 이에 대한 1개 이상의 대응방안을 작성해 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전파/훈련시키는지, 이때 전파·훈련 대상자에 협력업체 근로자 등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는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8/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귀사는 비상사태 훈련 계획서에 사고나 재해 발생시 상황별 대책, 비상대응 조직별 업무, 비상대책반 구성,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 Flow, 비상사태 교육 및 훈련 Flow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현장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됨
- 모의훈련의 경우 대부분 화재사고를 주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작업중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중지에 관한 종사자 홍보, 전파, 교육 등에 관한 활동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수사 대응을 위한 필요 조치

본사 및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위험 발생시 작업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등 대응조치 방법과 절차 등을 기재한 **매뉴얼, 해당 매뉴얼을 사업장에 시달한 문서, 경영책임자들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를 보고받거나 점검한 자료 등 중대산업재해 위험 발생에 따른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외에도 동종유사 사업장 소속 종사자 전원에게 재해 발생 사항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는 절차에 관한 자료도 구비**할 것을 권유 드림

이행 방안

- 모의훈련 실시 및 관련 프로세스는 **일응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매 반기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화재사고로 진행할 경우 자칫 모의훈련이 형식적·명목적인 차원에서 실행하였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고, 화재사고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각 현장 특성에 맞는 주요 비상 사태에 관한 다양한 테마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만일, 동일한 화재사고로 진행하더라도 화재사고로 인한 질식,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깔림, 추락 사고 등 복합적인 중대재해 요소를 추가하고 현장 공정에 맞는 비상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으로 보다 실질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작업중지권의 경우 **작업중지권의 내용이 담긴 매뉴얼 등을 마련(예시 규정 울촌 제공)**하여 종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작업현장에 비치, 교육 내용에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작업중지권의 주체가 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중지 발생 시 기록화 문서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대피와 관련한 내용에는 장소별 대피 "경로"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귀사 비상사태 훈련 계획서 내지 기타 현장 매뉴얼에서는 **각 현장의 장소별 적절한 대피 경로를 논의하여 미리 구상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작업중지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 규정

작업중지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 규정 (산출물 별도 제공)

작업중지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라 회사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발생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등 절차를 규정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회사의 임직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이나 회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어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작업중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해야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 발생
 - 나. 주요 장기 손상, 신체 일부 절단 등 6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발생
 -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 발생
4. “유해·위험작업”이란 추락, 협착, 충돌, 붕괴, 전도, 감전, 화재·폭발, 화상, 중독, 질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경영책임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작업중지 및 대피

- 제4조 운전정지
- 제5조 작업중지
- 제6조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 제7조 불이익금지

제4장 사고원인 조사 및 안전조치

- 제11조 위험제거 및 작업재개
- 제12조 사고원인 조사
- 제13조 안전보건 개선조치
- 제14조 보고 및 기록

제3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 제8조 구호조치
- 제9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신고
- 제10조 추가피해 방지조치

제5장 재발방지 및 훈련

- 제15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제16조 사고대응팀
- 제17조 재해발생 대비훈련
- 제18조 확인·점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19/23)

중대산업재해

1-9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시행령 제4조 제9호)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안전 보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가 도급,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지
- 안전보건 활동 우수협력업체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하고 있는지
- 하도급 계약서에 협력업체의 안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보전하고 있는지
- 협력업체의 안전 관련 추가 비용 요구, 공기연장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 협력업체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20/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귀사 구매팀에서 수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후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현장에서 우수 수급업체를 추천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수급업체는 입찰 정지 조치)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수급업체 선정 시 평가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재해율, 전담조직 여부, 안전보건방침 등 간단한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행 방안

- 단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가 수급업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제도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수급업체를 "선정" 하는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역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계약과 연계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 담당자(예: 안전관리자 등)의 의견도 청취/반영하는 절차 추가 고려 가능
 - ▶ 협력업체 선정 평가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리' 분야의 점수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 등을 기준으로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과락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예시 규정 율촌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해 **협력업체의 협조의무를 요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통해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귀사가 수급인 종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귀사가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미리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예컨대,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주요 작업별 작업일수 / 정리기간 등) **적정 공사기간**을 정하고, ②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며, ③ 협력업체 등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의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표준 매뉴얼

❖ 본 매뉴얼은 표준 매뉴얼로서 건설공사 도급인과 발주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제공 드리는바, 건설공사 발주자에 관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 책임	도급관리 Process
주요 해설 내용	주요 유형과 유형별 관리 Process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요지 • 협력업체 관리의 필요성 • 시행령상 의무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발주 • 건설공사 도급 • 사내하도급 |
|--|---|

안전보건확보대상 여부 검토	유형별 안전보건 확보조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상 책임 여부 판단	주요 유형별 검토 및 유의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여부 판단 • 건설공사발주자 해당여부 - 발주자/도급인 구별 필요성 - 발주자/도급인 구별 체크리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발주자의 시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② 시공사 및 협력업체 체크리스트 • 건설공사 도급시 협력업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② 협력업체 체크리스트 • 사내 하도급시 협력업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협력업체 관리 업무절차 ② 협력업체 체크리스트 |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21/23)

중대산업재해

- 2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
- 3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 4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시행령 제5조)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경영책임자에게 점검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지
- 안전보건 관계 법령 미이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 인력 배치나 추가 예산 배정 등 적절한 조치가 실시되는지
- 산안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명확히 숙지되어 있고, 반기 1회 이상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 교육 미실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지
- 안전보건 조직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종류와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22/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제공된 대응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귀사는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를 마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리스트화 하여 관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계법령상의 주요 확인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장에서 반기점검에 따른 개선 결과에 대하여 걱정 여부, 예산 추가 집행, 환경안전부문 대표이사 의사결정을 한 사항 등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외부업체(제이세이프티)를 통해** 전체 현장의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본사에서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올해부터는 외부업체의 반기점검 시 본사 환경안전팀 인력도 같이 참여하여 서류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귀사는 매년 초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사에서 현장별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함**

이행방안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점검과 관련하여 **일용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한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별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에 대해 보고하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귀사 대표이사가 반기 1회 이상 위 보고를 받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충실히 기록하여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음**
- 올해부터는 외부업체의 반기점검 시 본사 환경안전팀 인력도 같이 참여하여 서류 등을 함께 점검하여, **일용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외부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아 보이는바, 귀사로서는 외부업체의 점검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기 보다는 **본사 환경안전팀 및 현장의 안전보건 인력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및 평가에 근거가 된 자료들을 확인하는 등 크로스체크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작업 및 귀사 작업/공정 특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방안(23/23)

중대산업재해

현황

- 현장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작성하고 사업부별 재발방지대책 협의회를 실시하여 현장소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환경안전팀에서도 재발방지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행 방안

-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 및 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예컨대, 조사단으로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를 함께 구성하는 방안 등)와, 재해방지 대책에도 현장 담당자 및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둘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재점검할 수 있는 환류체계(피드백)를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점들을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재발방지 대책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 이와 연계된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재차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할 것
- 안전·보건 예산 항목에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위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차 보고 절차(수검 내용 보고 절차)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 및 귀사 대표이사에게 개선, 시정 등이 명해진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개선, 시정명령 사항을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 사항 중 전파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사례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예컨대, 인트라넷, 협조전, 공문 등)을 강구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교육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언] 탕정 흑업 샷장의 전반적인 의무이행 사항

중대산업재해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종합 의견
1-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M, 안전보건 교육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종사자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음
1-3	유해·위험요인 을 확인·개선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위험성 평가 실시로 같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재해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항목을 추가·보완하는 등 위험성평가 항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업무, 또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작업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샷장에 상주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하고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샷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1-6	산안법상 요구되는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시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자 등의 미선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탕정 흑업 현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위탁업체)가 샷장의 안전보건 업무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위탁업체)는 제작 현장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1-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하여 점검 및 조치(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샷장의 의견 개진을 보다 높이기 위해 노사협의체에 제작 현장 소속 근로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타사 사례를 참고하면) TBM 일지에 의견 청취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는 등의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아울러, 귀사가 개발한 QR코드를 제작 현장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1-8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중지에 관한 매뉴얼 및 규정을 샷장에 비치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하여 협력업체를 포함한 종사자에게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근거 자료들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로서는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항목을 제작 현장과 조립 현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나, 최소한 제작 현장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도 반영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탕정 흑업 샷장'의 경우, 시공 및 조립 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이행이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시공 및 조립 현장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와 같은 사항은 우선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탕정 흑업 샷장'과 더불어 '안성의 기흥화성 NRD-K 샷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 유해·위험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제안: 개요(1/2)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핵심 3대 요소



안전보건전담조직

- 경영책임자 직속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및 운영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보좌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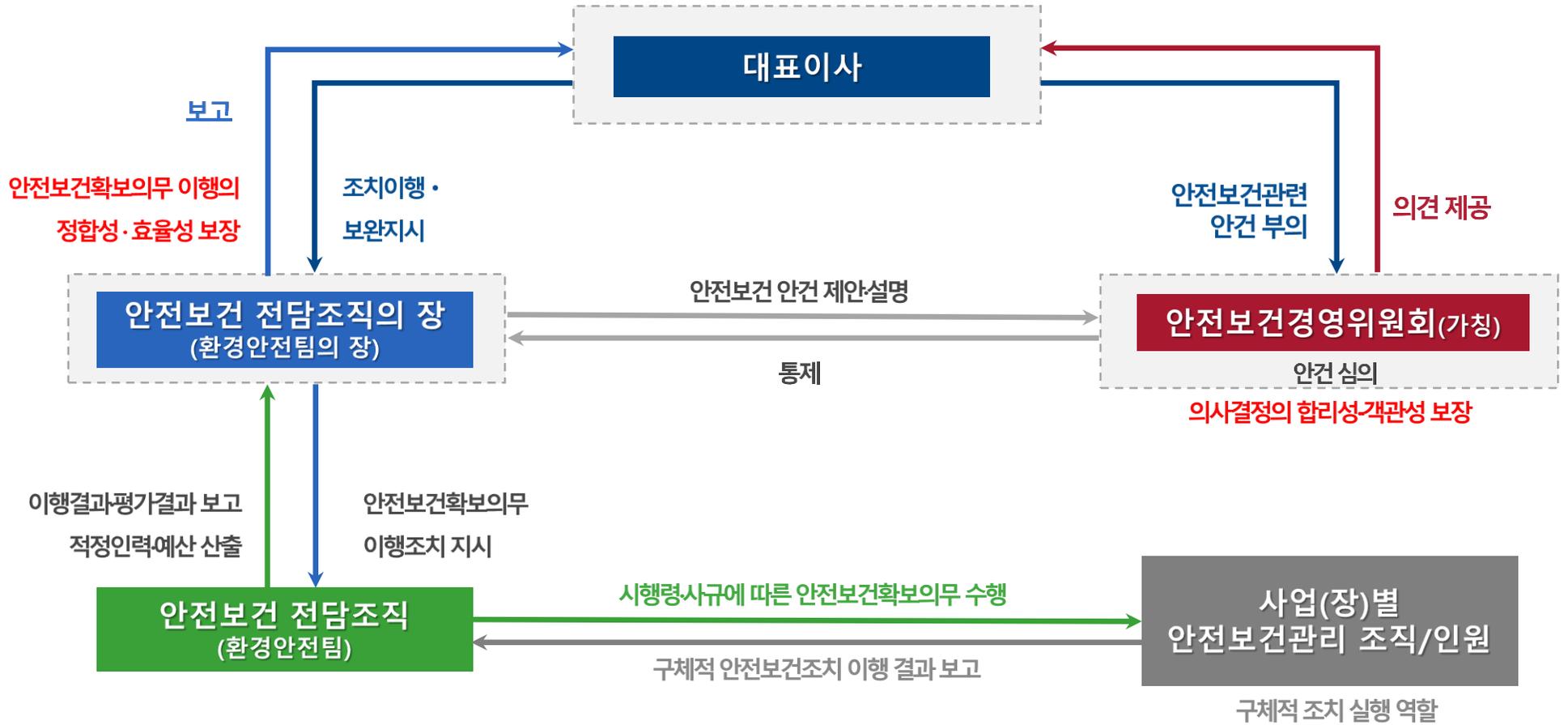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수립 및 이행 하도록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

경영책임자등 규정

- 경영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명확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 기대

안전보건관리체계 제안: 개요(2/2)

안전보건관리체계 도식



3대 요소 -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칭)

•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칭)의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에 속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적정성 판단,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조치, 이를 위한 안전보건 예산의 적정성 평가, 종사자 의견의 적정성 평가 등의 경우, 그 적절한 이행 수준이 다뤄질 수 있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상의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것을 권유 드림.
- 귀사 대표이사가 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에 지시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근거 마련

• 위원회구성

- 위원장: 대표이사
- 위원: 관련 임원, 각 사업부문 및 팀의 장, 환경안전팀의 장, 외부 전문가 등
- 간사: 환경안전팀 구성원

• 심의의결사항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평가
-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 전담조직 또는 전담자 및 관련 인력의 구성, 적정성 평가
- 안전보건 예산의 적정성 평가
- 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대 요소 - 경영책임자규정: 역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 기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하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명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회사 소속 임직원 등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사의 임직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이나 회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2. 산업재해
종사자가 회사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해야 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

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영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명확화

2

▪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개별 의무의 이행 방안을 각 조직별로 구체화

3

▪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 규정

4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 입증

IV. 최종 산출물

최종 산출물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최종보고서

- 공장 및 사업장 등 의무이행 범위 추가 검토 등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련 규정 및 매뉴얼 제·개정 및 예시안

- 경영책임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안)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규정(안)
- 협력업체 관리 매뉴얼(안)
- 작업중지 및 중대산업재해 대응 규정(안)

□ 협력업체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타사 샘플자료 제공



감사합니다
